

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과 동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세정 13407-948, 2000. 7. 27)

8.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취득세 면제 여부

【질 의】

1.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동법 제14조 ①항 및 ④항에 의거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인수 또는 출자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적용 여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⑤항6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같은 취지로 설립된 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면제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조합이 과점주주가 될 때에는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2.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기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자세) ③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음.

만일 공동사업자로 본다면 조합을 하나의 주체로 보고 개별 조합원(개인, 법인, 구조조정전문회사)별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